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5. 10. 1.>

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(양육비 채무자용)

양육비 채무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선지급 신청인	성 명			

1. 양육비 채권자가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**양육비 선지급 대상자**로 **결정**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지원자녀명	신청인과의 관계	선지급금(월)	선지급 시작 달
		원	년 월

2.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(성년의제를 포함합니다) 지급됩니다. 다만, 양육비 채무자가 **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**할 수 있으며,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은 경우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3. **양육비 선지급금은**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10에 따라 **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**하며, **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**

4. 양육비 선지급 회수 통지서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될 예정입니다.

※ 업무담당자: 부서명 성명 문의 전화번호

년 월 일

양육비이행관리원장 직인

참고사항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

이의신청 안내

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거나,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으로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**30일** 이내에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